

① 개정개요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임업후계자 등 취득세 감면 <input type="radio"/> (감면대상 및 감면율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·분합하는 임야 : 100% - 보전산지 임야 : 50% <input type="radio"/> (일몰기한) <u>2025.12.31.</u>	<input type="checkbox"/> 감면요건 추가 및 연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input type="radio"/> (감면대상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현행과 같음) - <u>직접 임업을 하기 위해</u> 취득하는 보전산지 임야 : 50% <input type="radio"/> (일몰기한) <u>2028.12.31.</u>

□ 개정내용

- 임업에 대한 지속 지원을 통한 농림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일몰기한을 연장하고,
 - 감면 취지를 고려하여 보전산지에도 “임업 직접 사용” 요건 추가
※ 종전에는 보전산지는 직접 임업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 적용

□ 적용요령

- 이 법 시행(2026. 1. 1.)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(부칙 §2)